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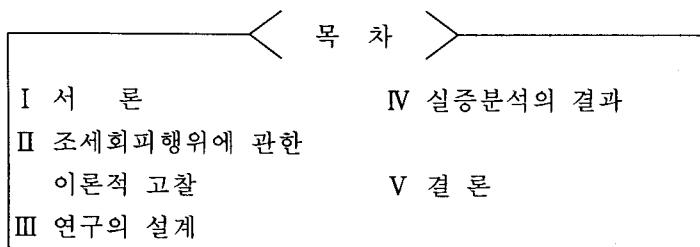
納稅者의 態度 및 認識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axpayers' Attitude and Cognition

최 임 수*
(Choi, Im-Soo)
김 복 구**
(Kim, Bok Goo)

논문접수일 : 97. 11

게재확정일 : 97. 12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세금은 국가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재정적 원천이다. 따라서 국가는 일방적 이전의 성격을 가지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납세자간의 가시적 내지 비가시적인 마찰이 발생하게 된다. 이 때 납세자는 가능한 한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선택할 것이고 반면에 국가는 국가정책에 의거 의도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만약 납세자가 조세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실행할 때 소득재분배의 저해, 비효율적인 자원배분

* 중앙대학교 강사

** 동해전문대학 세무회계과 전임강사

, 조세부담의 불공평성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다.

조세회피와 관련된 공식기관에 의한 우리나라의 소득세회피와 관련된 직접적인 자료는 없으므로 조세회피실태나 그 규모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다. 재정경제원이 1994년 7월 금융실명제 실시 제1주년을 맞아 한국조세연구원에 의뢰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를 추정하였다. 추정방법으로는 통화지표에 의거한 Tanzi방식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금융실명제와 관련시켜 분석한 결과, 그 규모는 금융실명제 이전에는 GNP 대비 9~16%대였으나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인 1994년에는 8%대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972년 이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가 정경유착, 관료의 고질적인 부패 및 관치금융 등의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으며 조세회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하경제의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하경제로 말미암아 정부의 세금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되고 정부는 공공재의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없게 되며 조세의 제1원칙인 공평성마저 무너지게 된다.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조세회피행위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사회현상의 사체(surrogates)이므로 단정적으로 언급한다는 것을 불가능하다. Jackson과 Milliron(1986)은 납세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법의 복잡성, 조세구조의 공평성, 세율, 소득수준, 소득원천, 조세윤리 등을 요인으로 들어 과세당국의 정책적 변화를 환기시키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실증적 연구에 의한 연구로서 Spicer와 Lundsteht(1976)에 의하면 납세자의 조세회피행위는 조세회피사실이 적발될 경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처벌과 납세자의 태도 및 규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Song과 Yarbrough(1978)는 조세회피사실에 대한 적발확률을, Lewis(1979)는 이기심을, Friedland, Maital 및 Lutenberg(1978) 그리고 Spicer와 Becker(1980)는 세율을, Clotfelter(1983)와 Slemrod(1985)는 한계세율을 들고 있다. 변용환(1995)은 상대적 불형평성(inequity)을 인지하도록 되어있는 조세구조하에서는 피해자가 스트레스를 보다 많이 감지하고 이러한 상대적 피해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납세기피를 채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영모(1993)는 납세자의 세부담이 불공평했을 때 공평성 인지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납세자의 조세회피 또는 조세순응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요인들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납세자의 태도 및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도출하고 이에 대해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집단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때 납세자의 태도 및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수히 많을 것이므로 납세자의 행위론적 접근법에 한정하여 도출된 요인들을 대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2. 연구의 범위

납세자의 태도 및 인식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측면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요인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요인의 수에 제약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반면에 실증적 측면의 연구에서는 회귀모형(실제자료의 분석), 실험연구 및 조사연구의 3가지 방법이 있고 이 중 실험연구가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본 논문에서는 이중 조사연구방법을 이용하고자 한다.

한편 자영업자를 포함한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연구방법일 것이다.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가 소득세의 선행조세이고, 특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를 일반사업자와 과세특례자로 나누어, 그에 따라 적용하는 세율의 내용과 과세방법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를 수행한 선행 연구들을 보면 주로 소득세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진척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다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II. 조세회피 행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조세회피의 개념

조세회피란 세금을 극소화시키거나 줄이려는 합법적인 행위로서 이는 합법적인 행위의 영역보다는 탈법적인 행위의 영역에 가깝다(McBarnet, 1991, p.323). 또한 조세회피는 납세자가 사법상의 선택가능성을 이용하여 의도하는 바의 경제적 목적이나 성과를 달성하면서 이로 인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과세요건의 충족을 교묘히 면하려는 행위를 추구하는 속성을 말하는 것으로(이우택·이철재, 1994, p.41), 이는 조세포탈(탈세)과 절세의 중간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즉, 조세회피는 일면 적법성을 띠는 행위이지만 다른 면에서 볼 때에는 그러한 행위가 없으면 당연히 과세되어야 할 소득이 비과세 된다는 점에서 비규범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세회피는 허용되는 법 형태 하에서 가장 유리한 영업, 거래, 기업경영 및 소비방법을 선택해서 예정된 채무보다도 가벼운 부담만을 주는 구성요건을 납세의무자가 창출하는 것으로 정의된다(홍학표, 1988, p.54). 따라서 조세회피란 세법이 규율하고자 한 영역인데, 세법에 사용된 개념의 불완전성 등으로 인해 생긴 법의 흠결(legislative loopholes)을 이용하여 납세자가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으로(이태노·이철송, 1985, pp.16-17), 세법 규정의 어의에는 반하지 아니하고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광의로는 조세회피행위에는 조세포탈(탈세)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조세포탈(탈세)은 사실을 왜곡해서까지 고의로 조세의 부담을 적게 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조세회피행위는 사법상 허용되어 있는 법형식을 준수하고 또한 사실을 왜곡하는 일없이 그 형식을 범용하며 통상의 방법으로는 당연히 발생해야할 소득을 의식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형태로 처리함에 따라 세금의 부담을 피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草川十郎・田代茂, 1985, p.267).

2. 조세회피이론의 접근모형

(1) 이론적 접근모형

1970년대 납세자의 조세회피요인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여기에 사용된 주요 요인은 적발확률, 벌금률 및 세율이었다. 이러한 분석모형을 이용한 연구자들로는 Allingham과 Sandmo(1972), Srinivasan(1973), Yitzhaki(1974)]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납세자를 완전히 부도덕적이고 위험중립적 혹은 위험회피적이며 조세회피 사실이 적발되어 부담할지도 모르는 원가를 초과할 때는 언제든지 조세회피를 선택함으로써 효용을 극대화한다고 간주하였다. 또한 분석모형은 과세대상액이 많을수록 조세를 회피하는 경향이 더 크다고 가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론적 분석모형의 기초가 된 Allingham과 Sandmo의 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개별 납세자가 고의적인 과소신고에 의하여 조세회피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이론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납세자는 불확실성 하에서 소득금액을 사실대로 신고할 것인가, 아니면 사실보다 적게 신고할 것인가의 의사결정을 한다. 소득을 사실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사실이 과세당국에 적발되지 않으면 사실대로 신고한 경우보다 가치분소득이 크나, 과소신고사실이 적발되면 벌금을 징수 당하게 되고 따라서 사실대로 신고한 경우보다 가치분소득이 오히려 작게 된다. 이러한 이론을 기초로 하여 Allingham과 Sandmo는 다음과 같은 조세회피모형을 제시하였다.

$$E(U) = (1-p)U(W - \theta X) + pU[W - \theta X - \pi(W - X)]$$

여기에서 납세자의 실제소득 W 는 외생적(exogenous)이며 납세자는 알고 있으나 과세당국은 모르고 있다고 가정한다. 신고소득 X 는 납세자의 의사결정변수이며 신고소득에 대한 실효세율(constant rate) θ 는 비례세율이다.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은 p 이며 조사를 받게 되면 과소신고소득이 모두 적발된다. 적발될 경우 과소신고소득 ($W - X$)에 대하여 π 의 벌금을 내야한다고 가정한다.¹⁾ 이 때 가치분

1) 과소신고소득에 대한 벌금률 π 는 실효세율 θ 보다 크고, θ 에 가산세율을 더한 비율이다.

소득의 효용을 U 라고 하면 기대효용함수는 위의 산식과 같다. $W - \theta X$ 는 조세회피사실이 적발되지 않은 경우의 가치분소득이고 $W - \theta X - \pi(W - X)$ 는 적발되었을 경우의 가치분소득이며, 이 때 납세자의 선택기준은 기대효용의 극대화이다. 기대효용함수 $E(U)$ 는 소득의 함수이며 한계효용은 모든 소득수준에서 정(+)이고 강감소함수 즉, 납세자는 위험회피적인 성향을 갖는 것으로 가정된다.

분석결과를 보면 적발학률과 별금률의 증가는 신고소득 X 의 수준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조세회피를 감소시킨다는 결론을 명백하게 내리고 있으나 W 와 X 와의 관계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위험회피의 변화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게 되므로 분명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2) 실증적 접근모형

납세자의 행위론적 접근법에 의해 납세자의 조세회피 또는 조세순응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조세윤리요인

경제학자들이 비판한 것처럼 납세자의 조세윤리를 측정하는 기준은 애매모호하고 주관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Song과 Yarbrough(1978)는 납세자의 윤리를 이용하여 납세자의 행위를 분석하였다. 물론 납세자의 윤리수준을 측정하고 이것의 고저를 구분하는 것은 연구자의 관점이나 연구설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의 행위가 과거에 경제적 요인이나 제도적 요인 때문에 단순하게 반응한다고 하는 주장은 현대에 들어와서 설득력이 많이 약해지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윤리수준을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척도를 설정하거나 측정방법을 변형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²⁾ 또한 이 요인을 이용한 연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납세자의 조세회피현상에 관한 문헌연구를 실시한 Jackson과 Milliron(1986)은 윤리척도가 미래의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가장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영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 조세제도적 요인

납세행위를 분석하기 위해 세율과 같은 경제적 요인을 이용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Allingham과 Sandmo(1972) 그리고 Yitzhaki(1974) 등은 경제적 요인을 이용하여 납세자의 행위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론적인 연구에 더불어 실제자료를 추가한 연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한편 Spicer와 Lundstedt(1976b), Vogel(1974) 및 Song과 Yarbrough(1978) 등은 경제적 요인을 토대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2) 이러한 방법론을 이용한 국내의 연구로는 홍학표(1988)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납세자의 윤리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부정적인 조세윤리항목 10개와 긍정적인 조세윤리항목 10개를 설문하여 두 항목에 대한 반응점수의 합의 차이를 이용하여 납세자의 윤리수준의 고저를 분석하였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세율은 조세회피를 제거하거나 극소화하기 위한 강력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Cross와 Shaw, 1983). 이와 더불어 조세제도의 복잡성과 과세당국의 간섭과 같은 요인들도 납세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납세자의 조세심리적 요인

선행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조세의 제1원칙인 공평성은 납세자의 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납세자는 조세제도가 자신에게 공평하다고 인지할수록 조세순응측면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영모 1994).

또한 납세자는 제도적 제재와 비제도적 제재에 대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자는 조세회피에 대해 과세당국이 가하는 처벌로써 가산세 등을 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재가 심하다고 느끼면 납세자는 조세를 순응하려고 한다. 그것은 납세자가 게임이론(game theory)에 입각하여 행동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Beck and Jung, 1989). 후자는 납세자가 조세를 회피했을 때 주위에서 받는 비난 등으로 납세자는 양심의 가책을 심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chwartz 와 Orleans(1967) 및 Grasmick과 Scott(1982)는 납세자가 조세를 회피할 경우 받게 되는 사회적 비난이나 죄의식의 위협은 조세회피를 크게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4) 납세자의 지식적 요인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지식수준은 납세행위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 1976)은 전자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반면에 Witte와 Woodbury(1985)의 연구결과는 양자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동 연구에 따르면 납세자에게 조세에 관한 교육을 시키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자의 현상이 발생하는 반면 교육수준이 높은 지역의 대상자에게 있어서는 후자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납세자의 예산정책에 대한 지식수준도 납세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납세자가 국가예산의 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알고 자신이 납부하는 세금이 국가의 정책결정과 행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인지할 경우 납세행위는 달라지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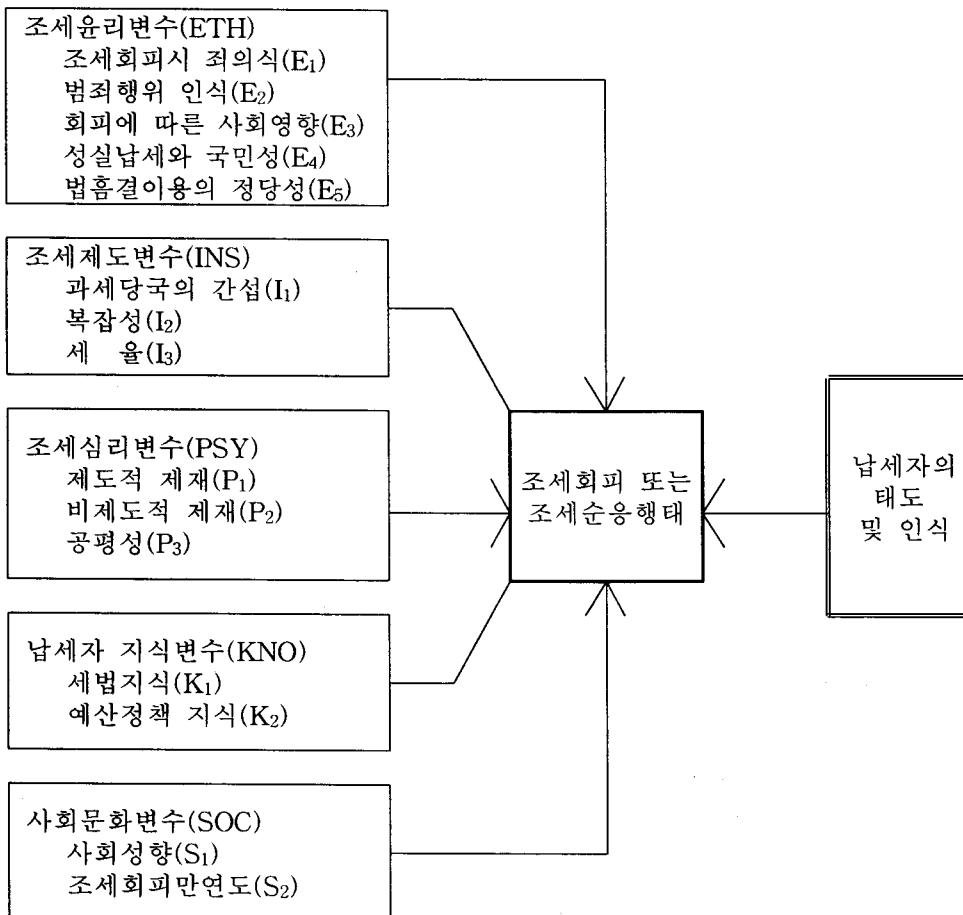
5) 사회문화적 요인

납세자의 조세회피 또는 조세순응행태는 납세자가 속한 사회현상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그 사회의 지배적이고 만연된 문화와 가치관에 따라 삶을 행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사회의 가치관이 올바르고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일 경우 납세자는 그러한 영향을 받아 납세행위를 할 경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다. 만일 납세자가 속한 사회에 부정과 부패가 만연되고 도덕성이 결핍

되었을 때 납세행위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것이다. Kaplan과 Reckers(1985)에 따르면 납세자는 조세회피가 만연되었다고 생각할 경우 조세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3) 본 연구의 접근모형

<그림 1> 납세자의 태도 및 인식에 관한 연구모형



납세자들의 조세회피 및 조세순응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납세자의 태도 및 인식은 조세제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윤리이나 지식수준과 납세자가 속한 사회와 문화 등 많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납세자의 태도 및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납세자의 조세회피 또는 조세순응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요인을 조세윤리변수, 조세제도변수, 조세심리변수, 납세자 지식변수 그리고 사회문화변수로 분류한 후 집단에 따라 각각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기로

한다.

III. 연구의 설계

1. 가설의 설정

본 연구의 첫 번째 관심사는 조세회피집단과 조세순용집단에 따라 납세자의 태도 및 인식이 다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설문조사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응답자를 조세회피 또는 조세순용집단으로 양분하고 양자간에는 납세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태도와 인식이 다르므로 다른 행위를 할 것이라는 견지에서 이 두 집단을 비교하는 것이 유의미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의 실제소득금액을 토대로 이에 대한 성실납세여부를 질문하여 응답자를 크게 조세회피집단과 조세순용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즉 ‘소득총액에 대한 세금을 사실대로 납부하셨습니까?’라는 설문항목에 대해 “① 전혀 그렇지 않았다. ② 조금 그렇지 않았다. ③ 그렇지 않은 것 같다. ④ 그런 것 같다. ⑤ 매우 정확하게 납부했다.”라는 5가지 설문문항을 기초로 하여 ①②③에 표시한 경우는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간주하고, 반면에 ④⑤에 표시한 경우는 조세를 순용한 것으로 간주하였다.³⁾

H₁ : 조세윤리변수, 조세제도변수, 조세심리변수, 지식변수와 사회문화변수에 대한 납세자의 태도 및 인식은 조세회피여부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두 번째 관심사는 직업에 따라 납세자의 태도 및 인식이 다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권영모(1993)의 연구는 자영업자나 근로소득자 모두 세금부담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자영업자보다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Wallschutzky(1984)는 호주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조세회피자나 조세순용자 모두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많은 곳은 자영업, 행상 혹은 농업에서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은 봉급생활자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다. Wall Street Journal(1984)에 의하면 일본의 봉급생활자는 소득의 90%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반면에 자영업자와 전문가들은 약 60%를 그리고 농부는 약 40%를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양 집단간에는 납세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태도와 인식이 다를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3) 본 설문을 ①에서 ⑤까지 세분한 것은 납세자가 세금이라는 예민한 문제에 대한 응답시 최대한으로 성실팔변을 유도해 내기 위함이다. 이는 납세자가 조세를 회피했을 때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할 것이나 그래도 그에 상당히 근접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제안에 기초를 두고 있다(Spicer와 Lundstedt, 1976).

H_2 : 조세윤리변수, 조세제도변수, 조세심리변수, 지식변수와 사회문화변수에 대한 납세자의 태도 및 인식은 직업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세 번째 관심사는 소득수준에 따라 납세자의 태도 및 인식이 다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Mason과 Lowry(1981), Witte와 Woodbury(1985)의 研究에 의하면 중간소득 계층이 가장 조세를 순응하는 경향이 있고 고소득계층이나 저소득계층은 상대적으로 조세를 회피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Srinivasan(1973)의 이론적 모형은 적발 확률이 일정하면 누진세제하에서는 납세자의 실제소득이 증가할수록 과소신고소득의 비율이 크고, Mork(1975)는 고소득계층으로 갈수록 과소신고소득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Spicer와 Lundstedt(1976a)는 가구당 소득과 조세저항간에는 부(-)의 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 연구결과가 상반된다.

H_3 : 조세윤리변수, 조세제도변수, 조세심리변수, 지식변수와 사회문화변수에 대한 납세자의 태도 및 인식은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2. 변수의 선정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집단에 따라 납세자의 태도 및 인식이 어떻게 다른가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납세자의 조세회피 또는 조세순응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요인을 크게 5개의 변수로 분류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세윤리변수

납세자의 조세회피 또는 조세순응행태에 관한 행위론적 접근방법에서 중시되고 있는 것이 납세자의 조세윤리이다. 이를 측정하는 기준은 애매모호하고 주관적이나 납세자의 윤리수준이 높으면 납세자는 조세회피행위보다는 조세순응측면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5개의 설문지를 설계하여 이를 측정하였다. 설문내용은 (1) 조세를 회피했을 때 죄의식을 느낀다. (2) 조세회피 행위는 중대한 범죄이다. (3)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은 진정한 민주국민이다. (5)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해서 법의 험결을 이용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위이다. 이와 같은 설문내용에 대해 ‘아주 반대’이면 ①을, ‘그저 그렇다’이면 ③을 그리고 ‘아주 동의’이면 ⑤에 이르는 Likert-type Scale의 5점 척도로 측정을 하였다.

(2) 조세제도변수

납세자의 조세회피 또는 조세순응행태를 분석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경제학적 모형을 이용한 접근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도 납세자의 인식

및 태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3개의 경제학적 요인과 관련된 문항을 설계하였다. 설문내용은 (1) 우리나라 과세관청의 간섭이 심하다. (2) 우리나라의 소득세 제도가 복잡하다. (3)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이 높다. 이와 같은 설문항목에 대해 ‘아주 반대’이면 ①을, ‘그저 그렇다’이면 ③을 그리고 ‘아주 동의’이면 ⑤에 이르는 Likert-type Scale의 5점 척도로 측정을 하였다.

(3) 조세심리변수

앞에서 든 납세자의 조세윤리변수와 마찬가지로 조세심리변수도 조세회피 또는 조세순응행태 접근모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다음과 같이 3개의 질문을 설계하였다. 설문내용은 (1) 조세를 회피함으로써 과세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예: 가산세, 벌금 등)가 심하다. (2) 지난해 납부한 세금이 다른 납세자와 비교해 볼 때 공평하다. (3) 조세를 회피함으로써 받는 비제도적인 제재(예: 동료 및 사회로부터 받는 비난 또는 조세범에 대한 체포의 두려움)가 심하다. 이와 같이 3개의 질문항목에 대해 ‘아주 반대’이면 ①을, ‘그저 그렇다’이면 ③을 그리고 ‘아주 동의’이면 ⑤에 이르는 Likert-type Scale의 5점 척도로 측정을 하였다.

(4) 납세자 지식변수

납세자가 세법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경우 이는 조세순응측면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조세회피측면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납세자의 지식이 납세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Witte와 Woodbury(1985)는 납세자에게 조세에 관한 교육을 시키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자의 현상이 발생하는 반면 교육수준이 높은 지역의 대상자에게 있어서는 후자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납세자가 예산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경우 자신이 조세를 회피할 경우에 그에 따른 발생하게 될 파급효과를 인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납세자는 조세를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과 같이 2개의 설문지를 설계하여 이를 측정하였다. 설문내용은 (1) 우리나라의 소득세 제도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예산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와 같은 조사항목에 대해 ‘아주 반대’이면 ①을, ‘그저 그렇다’이면 ③을 그리고 ‘아주 동의’이면 ⑤에 이르는 Likert-type Scale의 5점 척도로 측정을 하였다.

(5) 사회문화변수

납세자의 조세회피행위는 사회적 현상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납세자가 정부를 신뢰하고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경우 납세자는 조세를 순응하는 경향이 있고, 반면에 사회적으로 조세회피행위가 만연되어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보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2개의 설문지를 설계하여 이를 측정하였다. 설문내용은 (1) 사회의 성향이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2) 우리 사회는 조세회피가 만연되어 있다. 이와 같은 설문항

목에 대해 '아주 반대'이면 ①을, '그저 그렇다'이면 ③을 그리고 '아주 동의'이면 ⑤에 이르는 Likert-type Scale의 5점 척도로 측정을 하였다.

3. 자료의 수집 및 표본의 구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지역으로는 제주도지역을 제외한 서울지역, 경상도지역, 경기도지역, 전라도지역, 충청도지역 및 강원도지역의 6개 지역으로 하였다. 표본추출에 있어서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1995년 11월 1일 현재의 각 지역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충화확률표본이론에 근거하여 선정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예상표본 1,200명을 각 도별인구수에 비례하여 할당하였다. 그리고 나서 크게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 도시와 농촌, 도별 및 남녀로 구분한 후 이들이 차지하는 각 비율에 따라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그리고 1996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설문조사원이 앞에서 언급한 기준에 의거 배분된 설문지를 가지고 직접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무작위로 직접배포한 후 회수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당일날 설문지를 배포하고 당일 오후 내지 다음 날 회수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총 1,200부수 중 993부수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82.75%를 보이고 있고, 이중 948부수가 이용가능하며 유효회수율은 79.0%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한편 회수된 것 중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45부수는 응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중요한 항목을 누락시켰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표 2> 설문지 배포 및 회수현황

구분 지역	서 울	경 상 도	경 기 도	전 라 도	충 청 도	강 원 도	계
	6개지역	8개지역	6개지역	4개지역	4개지역	2개지역	
배 포 부 수	280	345	270	145	120	40	1,200
회 수 부 수	251	205	254	131	117	35	993
회수율 (%)	89.64	59.42	94.07	90.34	97.50	87.50	82.75
유 효 부 수	243	197	242	121	112	33	948
이용가능부수	193	170	190	91	76	28	748
이용가능률 (%)	68.93	49.28	70.37	62.76	63.33	70.00	62.33
회 수 방 법	인 편						

- (주) : 1. 회수방법에서 '인편'은 설문조사원을 활용했음을 의미함.
 2. 도시와 농촌, 남도와 북도 및 남부와 북부지역을 충화할당시킴.

그리고 표본대상을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로 크게 나누고, 이를 다시 우리 나라 소득세법상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기준에 의거 세분류한 결과, 유효한 948부수 중에서 봉급생활자이면서 소득수준이 연 1천만원 이하인 소득계층 200명 전체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근로소득자의 면세점,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의 상대적 크기, 소득외형의 차이 때문이다. 소득총액에 대한 조세회피여부를 직접적으로 설문하는 방식을 이용한 바 여기에서 이와 같은 응답자의 반응을 인식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IV. 실증분석의 결과

1. 요인분석

납세자의 태도 및 인식을 분석하기 앞서 먼저 분석의 대상이 되는 변수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과 같이 제1요인과 제5요인이 각각 가장 높은 고유치와 가장 낮은 고유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설명되는 요인 공통분산의 백분율은 제1요인이 16.4%를 그리고 제5요인이 7.9%를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54.6%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요인적재량이 모두 0.5 이상으로 본 연구의 측정척도는 의미있는 구성개념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 제1요인이 0.6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5요인이 0.41로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0.53을 보이고 있어 크론바하 알파값이 0.50 이상이면 비교적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본 분석의 측정 신뢰도는 의미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 요인분석 결과

Factor	F1			F2			F3			F4			F5		
변수명	E ₁	0.68	0.57	I ₁	0.65	0.65	P ₁	0.57	0.57	K ₁	0.69	0.69	S ₁	0.65	0.65
	E ₂	0.66	0.56	I ₂	0.60	0.60	P ₂	0.55	0.55	K ₂	0.63	0.63	S ₂	0.64	0.64
	E ₃	0.65	0.50	I ₃	0.41	0.41	P ₃	0.35	0.35						
	E ₄	0.60	0.47												
	E ₅	0.60	0.39												
Cronbach α	0.66			0.49			0.41			0.55			0.55		
Eigen Value	2.46			1.67			1.56			1.31			1.19		
Pct of Var	16.4			11.2			10.4			8.7			7.9		
Cum. Var	16.4			27.6			38.0			46.7			54.6		

(주) 1. Factor의 1, 2, 3란은 각각 변수명, loading 값, 공통분산치를 나타냄.

2. 변수에 대한 정의는 <그림 1>과 <표 4> 참조.

3. 전체에 대한 Cronbach의 alpha값은 0.53임.

4. Eigen Value의 합은 8.19임.

2. 단일변량검증

조세회피요인 및 조세순응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납세자의 태도 및 인식에 관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각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과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표 4>와 같다. 총표본 중에서는 남성은 538명으로 17.9%를 그리고 여성은 210명으로 28.1%를 차지하고 있다. 직업별로 볼 경우 봉급생활자가 360명으로 48.1%, 자영업자가 388명으로 51.9%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조세순응집단은 502명으로 67.1%를, 반면에 조세회피집단은 246명으로 32.9%를 나타내고 있다.

<표 4>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변수 명	평균	표 준 편 차	상 관 관 계							
			SEX	JOB	EVA	INC	ETH	INS	PSY	KNO
SEX		0.449	1.000							
JOB	1.2807	7	0.048	1.000						
EV		0.500	-0.064		1.000					
A	1.5187	0	-0.104*	0.253**	0.071	1.000				
INC		0.470	*	-0.087*	-0.118*	-0.087*	1.000			
ET	0.3289	1	-0.050	-0.041	*	0.011	-0.047	1.000		
H		0.582	-0.142*	0.036	0.092*	0.034			1.000	
INS	2.0588	4	*	0.019	-0.056		0.100**	0.199**	0.067	1.00
PSY	16.943	3.294	-0.021	0.053	0.012	0.110**	0.084*	-0.069	-0.04	0
KN	9	5	-0.082*	0.046	-0.083	-0.061		-0.112*	0	0.00
O	11.056	2.027	-0.033				0.247**	*		2
SOC	1	1								
		2.026								
	8.8021	8								
		1.484								
	4.9291	1								
		1.599								
	6.0027	0								

- (주) 1. 변수 SEX - 성별로서 남성은 '1', 여성은 '2'
 정의 : JOB - 직업으로서 봉급생활자 '1', 자영업은 '2'
 EVA - 조세회피여부로 조세순응인 경우 '0', 조세회피인 경우 '1'
 INC - 소득수준으로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 4천만원 이하인 경우 '2',
 8천만원 이하인 경우 '3', 8천만원 초과인 경우 '4'
 ETH - 조세윤리변수의 합 (5가지 설문항목)
 INS - 조세제도변수의 합 (3가지 설문항목)
 PSY - 조세심리변수의 합 (3가지 설문항목)
 KNO - 납세자 지식변수의 합 (2가지 설문항목)
 SOC - 사회문화변수의 합 (2가지 설문항목)
2. **, * : 각각 1%, 5% 수준에서 유의함(양측검증)

상관분석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자영업자가 조세회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이 여성보다 그리고 봉급생활자가 자영업자보다 소득수준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조세순용집단일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윤리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세제도에 대한 인식을 보면 남성일수록 그리고 조세순용집단일수록 높게 나타났고 심리요인은 윤리수준, 조세제도요인 각각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남성일수록 고소득자일수록 그리고 윤리수준이 높을수록 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문화요인은 조세순용집단일수록, 윤리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조세제도요인값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조세회피 또는 조세순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납세자의 태도 및 인식을 조세회피여부, 직업 및 소득수준으로 한정하여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기로 한다.

먼저 각 변수별로 점수의 합을 구한 다음 이를 각 요인의 지수(index)로 간주하여 분석에 이용하기로 한다. 이러한 방법론은 Spicer와 Lundstedt(1976b)의 연구와 변용환(1995)의 연구에서 착안하였다. 특히 전자의 연구에서는 조세회피지수(tax evasion index)와 조세저항척도(tax resistance scale)를 도입하였다.⁴⁾

3. 가설검증

본 연구의 목적인 납세자의 태도 및 인식이 조세회피집단과 조세순용집단에 따라,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에 따라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한가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세윤리변수

3개의 각 집단간에 조세윤리변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으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이 조세순용집단과 조세회피집단간에만 통계적으로 1% 내에서 아주 유의하게 나타났다(전체평균 : 16.9439). 조세순용집단은 평균이 17.1833으로 조세회피집단의 평균 16.4553보다 0.7280만큼 높게 났다. 또한 조세회피집단의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조세윤리의식은 조세회피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조세윤리의식이 높을수록 조세순용측면으로 그리고 조세윤리의식이 낮을수록 조세회피측면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4) 전자는 조세회피행위에 관련된 2가지 항목에 대한 점수의 합으로 납세자가 조세를 회피하려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반면에 후자는 불공평성 항목(inequity items)에 대한 점수의 합으로 납세자의 심리적 상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Spicer와 Lundstedt, 1976b, p.299).

<표 5> 조세율리변수에 관한 집단별 차이검증 결과

집 단		빈 도	평 균	표 준 편 차	F-value	P-value
조세회 피여부	조세순용	502	17.1833	3.2937	8.1383	0.0045***
	조세회피	246	16.4553	3.2482		
직 업	자영업자	388	16.8428	3.2451	0.7585	0.3841
	봉급생활자	360	17.0528	3.3480		
소 득	1천만원 이하	86	17.1512	3.1343	2.0322	0.1080
	4천만원 이하	552	17.0290	3.2588		
	8천만원 이하	90	16.5556	3.6692		
	8천만원 초과	20	15.4500	2.8741		
전 체 집 단		748	16.9439	3.2945	-	-

(주) *** : P < 0.01

(2) 조세제도변수

3개의 각 집단간에 조세제도변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표 6>과 같이 조세순용집단과 조세회피집단간에만 통계적으로 5% 내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전체평균 : 11.0561). 조세순용집단은 평균이 10.9263으로 조세회피집단의 평균 11.3211보다 0.3948 만큼 낮게 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조세제도에 관한 불만이 작을수록 조세순용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조세제도에 관한 불만이 클수록 조세회피측면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6> 조세제도변수에 관한 집단별 차이검증 결과

집 단		빈 도	평 균	표 준 편 차	F-value	P-value
조세회 피여부	조세순용	502	10.9263	1.9891	6.3080	0.0122**
	조세회피	246	11.3211	2.0816		
직 업	자영업자	388	11.1263	1.9719	0.9651	0.3262
	봉급생활자	360	10.9806	2.0851		
소 득	1천만원 이하	86	10.7442	1.9715	1.7936	0.1469
	4천만원 이하	552	11.1449	2.0092		
	8천만원 이하	90	10.7556	2.0896		
	8천만원 초과	20	11.3000	2.3418		
전 체 집 단		748	11.0561	2.0271	-	-

(주) ** : P < 0.05

(3) 조세심리변수

3개의 각 집단간에 조세심리변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표 7>과 같이 조세순용집단과 조세회피집단간, 직업간 그리고 소득계층간에 각각 5%, 1% 그리고 10% 내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전체평균 : 8.8021). 조세순용집단은 평균이 8.9084로 조세회피집단의 평균 8.5854보다 높게 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세심리가 조세회피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조세심리변수가 클수록 조세순용측면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직업간의 차이를 보면, 자영업자는 평균이 8.9923이고 봉급생활자는 평균이 8.5972로서 자영업자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는 바, 이는 일반적인 결과와는 상치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소득계층간의 차이를 보면, 4천만원 이하 계층이 8.679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8천만원 초과 계층이 9.20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이는 조세회피시 고소득계층이 과세당국으로 부터 제도적인 제재나 주위로부터 받는 비제도적인 제재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 조세심리변수에 관한 집단별 차이검증 결과

집 단	빈 도	평 균	표 준 편 차	F-value	P-value
조세회 피여부	조세순용	502	8.9084	4.2109	0.0405**
	조세회피	246	8.5854		
직 업	자영업자	388	8.9923	7.1524	0.0076***
	봉급생활자	360	8.5972		
소 득	1천만원 이하	86	9.1512	2.5999	0.0511*
	4천만원 이하	552	8.6793		
	8천만원 이하	90	9.1333		
	8천만원 초과	20	9.2000		
전 체 집 단	748	8.8021	2.0268	-	-

(주) *** : $P < 0.01$, ** : $P < 0.05$, * : $P < 0.10$

(4) 조세지식변수

3개의 각 집단간에 납세자 지식변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표 8>과 같이 소득계층간에 통계적으로 5% 내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전체평균 : 4.9291).

이를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1천만원 이하인 계층은 평균이 4.7093으로 소득수준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층의 평균 5.3500보다 0.6407만큼 낮게 났는 바,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지식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납세자는 더 많은 지식을 배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사회문화변수

3개의 각 집단간에 사회문화변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표 9>와 같이 조세순용집단과 조세회피집단간에 통계적으로 1% 내에서 아주 유의하게 나타

났다(전체평균 : 6.0027). 조세순용집단은 평균이 6.1116으로 조세회피집단의 평균 5.7805보다 높게 났다. 따라서 조세순용집단은 조세회피집단보다 사회문화적인 현상에 관한 인식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앞의 결과를 볼 때 전반적으로 조세회피여부와 직업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다음 <표 10>과 같이 집단을 4개로 나누어 추가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납세자 지식변수에 관한 집단별 차이검증 결과

집 단		빈 도	평 균	표 준 편 차	F-value	P-value
租稅回 避與否	조세순용	502	4.9163	1.4699	0.1136	0.7362
	조세회피	246	4.9553	1.5152		
職 業	자영업자	388	5.0052	1.5079	2.1179	0.1460
	봉급생활자	360	4.8472	1.4556		
所 得	1천만원 이하	86	4.7093	1.3794	3.4738	0.0158**
	4천만원 이하	552	4.8841	1.4944		
	8천만원 이하	90	5.3222	1.42521		
	8천만원 초과	20	5.3500	1.4965		
전 체 집 단		748	4.9291	1.4841	-	-

(주) ** : P < 0.05

<표 9> 사회문화변수에 관한 집단별 차이검증 결과

집 단		빈 도	평 균	표 준 편 차	F-value	P-value
조세회 피여부	조세순용	502	6.1116	1.5807	7.1352	0.0077***
	조세회피	246	5.7805	1.6164		
직 업	자영업자	388	6.0515	1.5921	0.7258	0.3859
	봉급생활자	360	5.9500	1.6070		
소 득	1천만원 이하	86	6.3140	1.6325	1.4901	0.2159
	4천만원 이하	552	5.9583	1.5974		
	8천만원 이하	90	6.0444	1.5858		
	8천만원 초과	20	5.7000	1.4903		
전 체 집 단		748	6.0027	1.5990	-	-

(주) *** : P < 0.01

첫째, 조세윤리변수에 대해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1% 내에서 아주 유

의하게 나타났다(전체평균 : 16.9439). 특히 제2집단인 경우에는 평균이 16.2093으로 가장 낮았고 반면에 제1집단이 17.34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0> 전체변수에 관한 집단별 차이검증 결과

설문 항목	집 단		평균	표준편차	F-value	P-value	Duncan 검증결과				
	자영업자	봉급생활자					집단	1	2	3	4
조세 윤리변수	자영업자	순용 (1)	17.3472	3.0062	4.1134	0.0066***	1	*			
		회피 (2)	16.2093	3.4272			2				
	봉급생활자	순용 (3)	17.0594	3.4954			3	*			
		회피 (4)	17.0270	2.7247			4	*			
전체			16.9439	3.2945	-	-	집단	1	2	3	4
조세 제도변수	자영업자	순용 (1)	10.9676	1.8637	2.1511	0.0925*	1				
		회피 (2)	11.3256	2.0884			2				
	봉급생활자	순용 (3)	10.8951	2.0815			3	*			
		회피 (4)	11.3108	2.0801			4				
전체			11.0561	2.0271			집단	1	2	3	4
조세 심리변수	자영업자	순용 (1)	9.3194	1.7639	6.7492	0.0002***	1				
		회피 (2)	8.5814	1.9910			2	*			
	봉급생활자	순용 (3)	8.5979	2.1657			3	*			
		회피 (4)	8.5946	2.0401			4	*			
전체			8.8021	2.0268			집단	1	2	3	4
납세자지식변수	자영업자	순용 (1)	5.0694	1.4722	1.4682	0.2219	1				
		회피 (2)	4.9244	1.5522			2				
	봉급생활자	순용 (3)	4.8007	1.4602			3	*			
		회피 (4)	5.0270	1.4332			4				
전체			4.9291	1.4811			집단	1	2	3	4
사회문화변수	자영업자	순용 (1)	6.2130	1.5374	3.2445	0.0215**	1				
		회피 (2)	5.8488	1.6403			2	*			
	봉급생활자	순용 (3)	6.0350	1.6110			3				
		회피 (4)	5.6216	1.5589			4	*		*	
전체			6.0027	1.5990			집단	1	2	3	4

(주) *** : P < 0.01, ** : P < 0.05, * : P < 0.10

표본수 : 자영업자이면서 조세순용인 제1집단 216, 회피인 제2집단 172,

봉급생활자이면서 조세순용인 제3집단 286, 회피인 제4집단 74

그러나 제3집단과 제4집단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Duncan방식에 의거 사후검증을 한 결과, 제2집단과 나머지 3개의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10%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제2집단의 조세윤리의식은 제4집단보다 낮으나 제1집단인 경우에는 제3집단보다 조세윤리의식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조세윤리의식은 순용일 경우에는 봉급생활자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조세제도변수에 대해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10% 내에서 유의하였고, 제2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게, 반면에 제3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제2집단이 제1집단보다 그리고 제4집단이 제3집단보다 각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Duncan방식에 의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2집단과 제3집단간에 통계적으로

10%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 각각에 대해 조세회피인 집단은 조세순용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조세제도에 대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제3집단과 제4집단의 평균은 제1집단과 제2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영업자가 봉급생활자보다 조세제도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만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셋째, 조세심리변수에 대해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1% 내에서 유의하였다. 제2집단이 가장 낮게 반면에 제1집단이 가장 높은 결과치를 보이고 있다. 제3집단과 제4집단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사후검증을 한 결과, 제1집단과 나머지 세 집단간에 10%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제1집단은 다른 세 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세심리적 요인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납세자 지식변수에 대해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았다. 평균치를 보면 제1집단이 가장 높게, 제3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조세순용인 집단에서, 봉급생활자인 경우에는 조세회피인 집단에서 더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후검증결과를 보면 제1집단과 제3집단간에 10%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지식변수가 높을수록 자영업자에게는 조세순용측면으로 반면에 봉급생활자에게는 조세회피측면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사회문화변수에 대해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5% 내에서 유의하였다. 특히 제1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게 반면에 제4집단이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한편 사후검증을 한 결과, 제1집단은 제2집단 및 제4집단과 그리고 제3집단은 제4집단과 10%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11> 사회문화변수 각각에 관한 집단별 차이검증 결과

집 단	표본수	사 회 성 향		조세회피만연도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자영업자	순용 (1)	216	3.1019	1.5374	3.1111
	회피 (2)	172	2.9186	1.6403	2.9302
봉급 생활자	순용 (3)	286	2.9545	1.6110	3.0804
	회피 (4)	74	2.6216	1.5589	3.0000
전 체	748	2.9559	1.5990	3.0468	0.9704

그러나 사회문화변수는 응답자의 반응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질을 가진 설문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석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먼저 사회성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자영업자이면서 조세순용인 제1집단과 조세회피인 제2집단의 평균은 봉급생활자의 각 집단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조세순용인 집단일수록 사회성향을 긍정적으로 인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세희피만연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자영업자이면서 조세순용인 제1집단은 봉급생활자이면서 조세순용인 제3집단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조세희피인 집단별로 살펴보면 봉급생활자의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의 조세희피 또는 조세순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요인들에 대한 태도 및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세희피여부, 집단 그리고 소득수준 3개의 집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세윤리변수에 대해서는 조세순용집단이 그리고 조세제도변수에 대해서는 조세희피집단이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조세심리변수에 대해서는 3개의 집단간에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집단별로 보면 조세순용집단일수록, 자영업자일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경우 높게 나타났다. 납세자 지식변수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문화변수에 대해서는 조세순용집단일수록 높은 수치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조세희피여부와 직업에 따라 추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납세자 지식변수를 제외한 4개의 변수에 대해서 집단간에 차이를 보여주었다. 특히 조세윤리변수에서는 자영업자이면서 순용집단인 경우, 조세제도변수에서는 자영업자이면서 조세희피집단인 경우, 조세심리변수에서는 자영업자이면서 조세순용집단인 경우 그리고 사회문화변수에서는 자영업자이면서 조세순용집단인 경우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납세자의 태도 및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대되는 정치변수, 경제변수, 세무행정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를 과세특례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로 세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지 못했다.

따라서 미래에는 납세자의 태도 및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변수를 종합적으로 포함시키고 연구의 대상을 세분화할 경우 연구결과를 보다 보편화시킬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권영모, “납세자의 조세 공평성 인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4.
- 변용환, “상대적 형평이론에 입각한 남세성실도의 연구,” 「경영학연구」 제24권 4호, 한국경영학회, 1995.11, pp.33-63.
- 이우택 · 이철재, 「조세법과 세무회계」, 조세통람사, 1994.
- 이태노 · 이철송, “세법상 실질과세에 관한 연구 : 조세회피의 규제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1985.
- 전태영,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6.
- 홍학표, “납세자의 조세저항운동에 관한 연구 : 조세저항의 완화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6.

<외국문헌>

- Allingham, M.G and A. Sandmo, "Income Tax Evasion :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 (November 1972), pp.323-338.
- Beck, P.J. and W.O. Jung, "Taxpayers' Reporting Decisions and Auditing Under Information Asymmetry," *The Accounting Review* 64(3), (July 1989), pp.468-487.
- Clotfelter, C.T., "Tax Evasion and Tax Rates : An Analysis of Individual Return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August 1983), pp.363-373.
- Cross, R.B. and G.K. Shaw, "The Evasion-Avoidance Choice : A Suggested Approach," *National Tax Journal* 36(4), 1983, pp.489-491.
- Friedland, N., S. Maital and A. Rutenberg, "A Simulation Study of Income Tax Evas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August 1978), pp.107-116.
- Friedman, M and A.J. Schwartz, "Alternative Approaches to Analyzing Economic Data," Stanford Hoover Institute Working Paper in Economics, Stanford University : National Bureau of Econ Research, (March 1990), pp.167-171.
- Grasmick, H. and W. Scott, "Tax Evasion and Mechanisms of Social Control : A Comparison with Grand and Petty Theft," *Journal of Economic*

- Psychology*, 1982, pp.213-220.
-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Work Statement*, Discussion of Compliance (Attachment A), 1976.
- Jackson, B.R. and S. Jones, "Salience of Tax Evasion Penalties Versus Detection Risk,"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Spring 1985), pp.7-17.
- _____ and V.C. Milliron, "Tax Compliance Research : Findings,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5, 1986, pp.125-165.
- Kaplan, S. and P. Reckers, "A Study of Tax Evasion Judgments," *National Tax Journal*, (March 1985), pp.97-102.
- Lewis, A., "An Empirical Assessment of Tax Mentality," *Public Finance* 34(2), 1979, pp.245-257.
- Mason, R. and H. Lowry, "An Estimate of Income Tax Evasion in Oregon," Survey Research Center, Oregon State University, Corvallis, Oregon, 1981.
- McBarnet, D., "Whiter than white collar crime : tax, fraud insurance and the management of stigma,"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2(3), (September 1991), pp.324-344.
- Milliron, V.C., "A Behavioral Study of the Meaning and Influence of Tax Complexit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3(2), (Autumn 1985a), pp.794-816.
- _____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Equity and Tax Complexity,"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Fall 1985b), pp.17-31.
- Mork, K., "Income Tax Evasion : Some Empirical Evidence," *Public Finance* 30, 1975, pp.70-76.
- Schwartz, R. and S. Orleans, "On Legal Sanctions,"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Winter 1967), pp.274-300.
- Slemrod, J., "An Empirical Test for Tax Evasio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985, pp.232-238.
- Song, Y.D. and T.E. Yarbrough, "Tax Ethics and Taxpayer Attitudes : A Surve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September-October 1978), pp.442-452.
- Spicer, M.W. and L. Becker, "Fiscal Inequity and Tax Evasion : An Experimental Approach," *National Tax Journal*, June 1980, pp.171-175.
- _____ and S.B. Lundstedt, "Audit Probabilities and the Tax Evasion Decision : An Experimental Approach,"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

- 1976a, pp.241-245.
- _____ and "Understanding Tax Evasion," *Public Finance* 31(2), 1976b, pp.295-305.
- Srinivasan, T.N., "Tax Evasion : A Model,"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 (November 1973), pp.339-346.
- Vogel, J., "Taxation and Public Opinion in Sweden : An Interpretation of Recent Survey Data," *National Tax Journal*, (December 1974), pp.499-513.
- Wallschutzky, I., "Possible Causes of Tax Evasion,"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5, 1984, pp.371-384.
- Wall Street Journal, *Japan, Italy Gear up to Nab Tax Violators, But Find Evasion Too Engrained to Root Out*, by B. Martin, November 19, 1984.
- Witte, A. and D. Woodbury, "The Effect of Tax Laws and Tax Administration on Tax Compliance : The Case of the U.S. Individual Income Tax," *National Tax Journal*, (March 1985), pp.1-13.
- Yitzhaki, S., "Income Tax Evasion :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3, (May 1974), pp.201-202.
- 草川十郎・田代茂, 「調査・査察の税務」, 日本税理士會連合會編集, 1985.10.